

의안번호	제655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용자금
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**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8월 23일

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6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4년 8월 23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4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출연개요

- 대상기관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
 - 의료원별 경영 정상화까지 소요 예상금액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지원 후 도에서 이자보전을 통한 의료원 재정부담 경감
- 출연내역 :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- 출연금액 : 66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출연기관	출연액			비고
	계(A=B+C)	기정(B)	금회추경(C)	
계	660,000	0	660,000	
청주의료원	360,000	0	360,000	
충주의료원	300,000	0	300,000	

※ '23. 11. ~ 12. 지역개발기금 220억원 융자(청주 120억, 충주 100억)

-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, 발생이자(3%)
- 도, 5년 거치기간 이자만 지원('24. ~ '28.)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기타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공공의료팀	임헌표	곽경희	이정건	3134

기관명	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 장 : 청주의료원(김영규), 충주의료원(윤창규)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주의료원 :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(사직동) · 충주의료원 : 충주시 안림로 239-50번지(안림동) - 주요사업 :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출연 예정금액 : 660,000천원</u> ○ 출연금 내용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2023년 예산액 (출연액)</th> <th colspan="3">2024년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계(A+B)</th> <th>기 정(A)</th> <th>금회추경(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0</td> <td>660,000</td> <td>0</td> <td>66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청주의료원</td> <td>0</td> <td>360,000</td> <td>0</td> <td>360,000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충주의료원</td> <td>0</td> <td>300,000</td> <td>0</td> <td>300,000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 분	2023년 예산액 (출연액)	2024년			비고	계(A+B)	기 정(A)	금회추경(B)	계	0	660,000	0	660,000		청주의료원	0	360,000	0	360,000		충주의료원	0	300,000	0	300,000	
구 분	2023년 예산액 (출연액)	2024년	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계(A+B)	기 정(A)	금회추경(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0	660,000	0	6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청주의료원	0	360,000	0	3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주의료원	0	300,000	0	3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~ 생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20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음 ○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, 원활한 경영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상환 이자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: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: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청주 및 충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 출연기관(재단법인)으로
 -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임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'23년 말 총 220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였음
-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발생 이자는 3% 이며, 지방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상환하되, 도에서는 일정 기간('24. ~ '28. / 총 33억원) 이자를 보전하기로 하였음
- 지방의료원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공공의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'원안의결'을 건의드릴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3년 예산액(최종)(C)	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			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감액(B-C)
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	0	660,000	660,000	0	0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사 중복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시급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청주의료원

설립근거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				전화번호 : 043-279-0114 홈페이지 : cjmc.or.kr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909 관립자혜의원 개설 2005 충청북도청주의료원(특수법인) 전환 2022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 2023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 		기관형태	출연기관			
직원현황 (24.7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711명		699명		12명(기간제 근로자)	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임기		
	이시장	김영규	청주의료원 원장		'22.08.01. ~ 25.07.31.(3년)		
	이사	정일용	청주의료원 외과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임헌표	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		재임기간		
	〃	이진숙	청주시 서원보건소장		재임기간		
	〃	김혜란	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이사		'22.04.01. ~ 25.03.31.(3년)		
	〃	최영락	온유한정신건강의학의원 원장		'22.09.16. ~ 25.09.15.(3년)		
	〃	이재숙	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 명예회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이명환	대한적십자봉사회 진천군협의회 회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〃	김용호	前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		'22.04.14. ~ 25.04.13.(3년)		
	감사	연방희	연방희세무사사무소 대표		'23.10.10. ~ 26.10.09.(3년)		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, 의료 및 치료기술 보급,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(백만원)	연도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'23.12.31.기준	자 산	32,479
	예산액	85,905	108,182	119,289		부 채	33,807
	지자체 지원액	3,678	11,955	8,846		자 본	△1,328
경영성과 (백만원) '23.12.31.기준	총수입			총지출		당기순이익	
	60,243			75,717		△15,474	

충주의료원

설립근거	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				전화번호 : 043-871-0114		
					홈페이지 : cjmct.or.kr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937 독립 청주병원 충주분원 설립 개원 ▶ 2005 충청북도충주의료원(특수법인) 전환 ▶ 2012 안림동 신축병원 이전 ▶ 2022 재할·호스피스병동 증축 			기관형태	출연기관		
직원현황 (‘24.7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	비정규직	
	429명		415명			14명(기간제 근로자)	
임원	직책(직책명)	성명	소속(직위)			임기	
	이사장	윤창규	충주의료원 원장			2022.08.01. ~ 25.07.31.(3년)	
	이사	임헌표	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			재임기간	
	이사	김명자	충주시 보건소장			재임기간	
	이사	김대중	웨딩클래스 대표			2024.02.05. ~ 27.02.04.(3년)	
	이사	원영숙	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			2022.02.09. ~ 25.02.10.(3년)	
	이사	김동건	제일안과 원장	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
	이사	오성록	前 충청북도 보건사무관	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
	이사	권정희	前 충주시의회 부의장			2024.03.02. ~ 27.03.01.(3년)	
	이사	김영훈	충주컨벤션센터 대표	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
	이사	이운영	CJB청주방송 본부장			2024.05.20. ~ 27.05.19.(3년)	
	감사	나기태	법무법인 열린법률사무소 변호사			2023.10.10. ~ 26.10.09.(3년)	
	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역주민 진료사업,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, 감염병 예방 및 관리, 재난 시 환자 진료, 건강 증진 및 보건 교육 사업, 의료 및 치료기술 보급,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 등 (백만원)	연도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‘23.12.31.기준	자 산	31,973
	예산액	86,141	101,740	99,049		부 채	17,950
	지자체 지원액	3,316	4,578	5,364		자 본	14,023
경영성과 (백만원) ‘23.12.31.기준	총수입			총지출		당기순이익	
	38,609			49,881		△11,272	

1-③ 출자·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보건정책과		출연	660,000천원 (도비 660,000천원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 경영이 악화된 의료원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 도모 및 공공의료의 역량 강화

□ 출연개요

- 출연근거
 -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(보조금 등)
 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 -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- 사업명 :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사업대상 : 청주의료원, 충주의료원
- 출연액 : 660,000천원(도비 660,000천원) * 청주 360,000, 충주 300,000
- 사업내용 : 청주·충주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지원

□ 산출기초

- '24년 제2회 추정 출연요구액 : 660,000천원

(단위:천원)

구분	금액	산출내역	비고
계	660,000		
청주의료원	360,000	융자금 12,000,000천원 x 발생이자 3% = 360,000천원	
충주의료원	300,000	융자금 10,000,000천원 x 발생이자 3% = 300,000천원	

□ 기대효과

- 지방의료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,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기반마련

□ 출자·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어 경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
-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공공의료 역량 저하

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17조(보조금 등)**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, 시설·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(出捐)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·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⑤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医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
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